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수행과제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 I )

과제책임자 ☑ 김경희 연구위원

0 0 0

r Tel: 02-3156-7187

e-mail: kh99kim@kwdimail.re.kr

#### 요 약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적용대상이 사업 뿐 아니라 중장 기계획으로 확대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공공기관도 포 괄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 산하 준공공기관의 사업에 관한 성별영 향분석평가 시범적용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 고자 함.

<sup>\*</sup>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경희·김둘순·최유진·문희영·김지혜·윤자영·류연규(2013).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1 배경 및 문제점

- 2002년 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삼았던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으로독립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분석평가 대상)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확대의 범위가 정부 사업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소관법령과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까지도 포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이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심 충평가'용어를 '특정평가'로 변경하였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 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비교

- 이처럼「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에 따라 2012년부터 실시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의성 인지적인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포함한 성인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그런데 2011년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 석평가 방법론이 개발되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매뉴 얼 개발이 법 제정 이전에 수행된 것과 달리 중장기계획에 대한 방법론 연구는 지금껏 수행되지 않았음.
  - 또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분석의 수준은 목표와 전략 등 다소 추 상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등 그간 성 평등 정책과 연계된 연구가 미진한 분야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수행기관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를 수행하는 반면, 공공기관은 특정평가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업무를 직접 위탁추진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인 시장형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공성의 추구가 더욱 명확하여 수익의 창출보다는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성별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큼.

### 〈표 1〉 정부부처별 산하기관 현황 예시

정부부처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타공공기관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고용노동부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 기술원	
	기타공공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육부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 재단	
	기타공공기관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 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 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처: 기획재정부(2013b),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변동 현황」, 보도 자료

●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적용은 영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영국은 2007년 4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양성평등의무(Gender equality duty)에 근거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음(김경희 외, 2008). 공공기관으로는 정부부처들과 대학교, 보건의료 기구들,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박물관,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뿐 아니라 외부 계약업체가수행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음.

-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바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7조(특정 성별영향분석평 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 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실제 분석평가로 적용되지 않았음.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전에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가 특정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심층평가를 운영해 왔지 만 여기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63건의 특정평가의 과제 중에는 공 공기관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음.
  - 분석평가 대상정책의 선정기준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수행기관의 하나로 추가 된 공공기관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대상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과 추진 방안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3년 연속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본 연구는 1차년도 과제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시범분석을 통해 분석평가 방법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정부사업을 위탁·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책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준정부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방안을 제시할 것임.

# 2 조사 및 분석결과

-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담당자와 기본계획 수립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 본 조사의 목적은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기본계획 성별영향분 석평가에 대해서 공무원의 태도, 지표에 대한 인식 및 운영체계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는 데 있음.
  -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경험과 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구 사항 등 을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었음.
- 조사 결과 분석 내용 및 정책과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제도의 주요 변화내용에 대한 인지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사안에 따라 인지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령이나 기본계획, 사업 등을 성평등의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유 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음. 담당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유용성을 알고 받아 들일 때에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해당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순기능을 중심으로 홍보가 강 화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여건에 대한 평가는 세부 내용에 따라 달리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기 관의 자체적 노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기관담당자들은 관련 부서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고위관리직 지원 여건과 관련해서 는 특별히 기관담당자, 여성, 컨설팅·교육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추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별 맞춤 전략이 요구됨.
-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소속 기관유형에 따라 달랐는데,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비율이 70%에 달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를 지정 및 운영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었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0~70%가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센터 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셋째, 기본계획의 주도적인 작성자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용역을 통한 전문가가 작성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음. 공무원 1인이 작성하는 데 따르는 문제가 많은 만큼, 이를 개선하고 책임 있는 작성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대체적으로 9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1차 초안은 기본계획 확정 1달 반에서 2달 정도 전에 마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넷째,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점을 감안하면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 편이었음. 그러나 그 중에서 분석평가결과 개선의견을 환류하 거나,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사례는 적 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이는 부서별로 중장기계획 수립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적다는 것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환류에 초점을 맞춘 지침 개선이나 운영전략이 필요함.
- 다섯째, 지표에 대해서는 분석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앙행정기관 및 계획수립 담당자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선정기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
  - 여성가족부가 매년 대상계획을 선정 및 통보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대상 선정 기준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음.
  -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와 잘 맞물리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3 정책제언

- 본 연구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분석방법과 추진절차에 관한 연구가거의 없으며, 적용대상이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했음.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세 부처를 연구대상으로 정하

여, 이들 부처 소관의 중장기 계획과 산하 준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시범분석을 통해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 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 가. 분석방법의 개선

- 기본계획 체크리스트 작성은 성별 관련성을 찾아내는 과정임. 성별 관련성은 분석평가 시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분석지표 1) 과 연계되므로 체크리스트 작성 시 성별관련성 판단이 분석평가 방 향과 연결되는 중요한 작업임.
  -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분석평가 대상계획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1순위로 '세부적인 선정기준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는 점이 꼽힌 바 있음.
  - 현재의 지침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이 성 평등을 추진하는 것이며 분석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을 "제4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 성이 있는지"로 정의하고 있는 바,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획은 "해당 분야에서 성 평등을 명시적인 목표로 하는 계획"으 로 하고 그 이외의 계획을 대상사업으로 수용하는 편이 타당함.
- 또한 대상계획 선정 기준으로 인적 대상사업, 시설설치·개선사업,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포함 여부를 제시하고 예

시로 세부사업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계획의 수립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과 분석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표 2〉체크리스트 개선안

	해당 여부	
제외계획	□ 성 평등을 명시적인 목표로 하는 계획 예)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예 □아니오
대상 계획	□ 인력 양성(전문가 활용 포함)사업 및 관련 제도	□예 □아니오
	□ 교육훈련 사업 및 관련 제도	□예 □아니오
	□ 취·창업 활성화사업 및 관련 제도	□예 □아니오
	□ 의사결정기구 구성·운영 및 관련 제도	□예 □아니오
	□ 시설·건물·건축물의 설비 확충·개선 사업 및 관련 제도	□예 □아니오
	□ 조사·통계정보 구축 사업 및 관련 제도	□예 □아니오
	□ 공공서비스 관련 사업 및 제도	□예 □아니오
	□ 인권 및 안전 관련 사업 및 제도	□예 □아니오

-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비전과 목표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지표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지, 해당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인식하고 격차 완화를 위한 특정한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 분석대상이 되는 계획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 해당여부에 체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할 것임.
  - 또한 분석대상 계획이 성별 격차 인식 및 완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계획이라면, 해당여부에 체크하고 관련내용을 작성해야 함.

- 성별격차 인식 및 완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육 성기본계획의 경우 기존연구들을 종합해서 도출한 성별관련성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여성 근로자 참여도를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 기업은 이미 여성 중심의 노동시장이며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개발과 확대의 잠재 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성에게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제로 전략할 위험도 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 기업육성기본계획이 과연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성친화적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며 그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임.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집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때 성인지 관점이 존재하는지는 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고유목표와 비전을 달성하는 데에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표 3〉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개선안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관련 내용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목표 공유	□있음 □없음	
2. 성별 격차 인식 및 완화를 위한 목표 설정	□있음 □없음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성별 요구에 따라 형평성을 갖춘 과제가 제안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관련 사업 및 제도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표시하고, 마련된 계획(안)이 성별 여건이나 요구

- 의 차이를 반영한 해당분야 사업이나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면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없음'에 해당됨.
- 성별 여건이나 요구 차이를 반영한 사업은 해당 사업에 성별 여건이나 요구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서술하고,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통해서 분석한 후 정책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성별요구를 반영한 성별 형평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는 여성친화적인 구조, 근로조건, 작업방식, 조직문화를 제공하는 지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취업계층이 주로 참여하는 청소업 종의 경우 참여자의 인적 특성만으로도 이미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총 매출의 5% 이상을 사회에 공헌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음. 문제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영역에서 사회공헌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출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 참여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임.
- 전통적으로 청소업종에 여성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 공헌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의도 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개선안 을 제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 성별요구 분석에서 성별요구차이와 성별 요구를 반영한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 항목이 세분화되어야 할 것임.

### 〈표 4〉 성별요구 분석 개선안(예시)

	분석평가 항목	성별요구 여부
	인력 양성(전문가 활용 포함)사업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교육훈련 사업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취·창업 활성화사업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1. 성별 요구	의사결정기구 구성·운영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차이	시설·건물·건축물의 설비 확충·개선 사업 및 관련 제도	해당없음
	조사·통계정보 구축 사업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공공서비스 관련 사업 및 제도	■ 있음 ■ 없음
	인권 및 안전 관련 사업 및 제도	■ 있음 ■ 없음
	인력 양성(전문가 활용 포함)사업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교육훈련 사업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취·창업 활성화사업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2. 성별 요구	의사결정기구 구성·운영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반영한 형평성	시설·건물·건축물의 설비 확충·개선 사업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조사·통계정보 구축 사업 및 관련 제도	■ 있음 ■ 없음
	공공서비스 관련 사업 및 제도	해당없음
	인권 및 안전 관련 사업 및 제도	■ 있음 ■ 없음

- 그밖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제시된 분석방법에 관한 개선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계획별 특징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크리 스트 항목을 세분화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밀한 검토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성별 요구나 형평성을 분석하는 항목은 체크리스트와 일관 된 기준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범위한 내용을 아우르는 비전 및 목표보다는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에서 젠더 이 슈를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수립 과정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분석항목은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위원회의 성별 구성이 적합한지 여

부를 검토하고 젠더 분과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할 것임. 이에 여성가족부의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준용하면서 제시해 본 분석항목을 포함한 분석방법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표 5〉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방법 개선안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해당여부
I. 비전 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ul><li>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 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 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li></ul>	<ul><li>■ 있음</li><li>■ 없음</li></ul>
II. 전략 및 중점 과제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 문화적·경제적· 신체적(생물학 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 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 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 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ul><li>■ 있음</li><li>■ 없음</li></ul>
	3. 성별 형평성	③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 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음)	<ul> <li>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배분 및 수혜에 있어서 성별 요구를 반영하였는지점검</li> </ul>	<ul><li>■ 기반영</li><li>■ 추후개선</li><li>■ 해당없음</li></ul>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④ 법령 반영 계획	<ul> <li>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 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 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ul>	<ul><li>□ 있음</li><li>■ 없음</li></ul>
		③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ul> <li>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 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 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li> </ul>	<ul><li>□ 있음</li><li>□ 없음</li></ul>

- 분석평가 항목별로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과 성별 요구도 '에서는 해당여부를 '있음' 또는 '없음'에 체크하도록 하고 그 근거 를 작성하도록 함.
  - 성별형평성은 수혜에서 성별로 다른 요구를 반영했는지 해당여 부를 '기반영', '추후개선', '해당없음'에 체크하도록 하고 그 근거 를 작성하도록 함.
  - '기반영'이라고 하면,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한 경우임.
  - '추후개선'은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인 경우임.
  - '해당없음'은 대상계획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생물학적) 여건의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은 앞서 분석한 성별 요구도(성별 요구 파악)와 성별형평성(성별 요구 반영)의 결과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반영계획과 사업 반영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해당여부에 체크한 다음 해당사항을 작성함. 이때 '법령 반영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법령명과 법령에 개선내용을 기재하고 '사업(또는 과제)반영 계획'에서는 해당사업 또는 과제명과 개선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이는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대상계획의 '전략 및 중점 과제'를 일차적인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①성별 요구파악 ② 수혜 에서의 성별요구 반영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중심으로 해당여 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세부 항목별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분석평가서를 통해 대상계획에 대한 분석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고 정책개선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추진절차의 개선

- 본 연구에서는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제시하는 평등영향 평가 9단계를 참고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을 준용하여 총 7단계를 거쳐 추진절차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 소관 기본계획에 대해 시범분석을 수행하였음.
  - 1단계에서는 해당계획이 분석평가 대상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체크리스트 활용), 2단계에서는 계획의 비전과 세부과제가 성 별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였음. 1-2단계 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검토하게 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음.
  - 3단계에서는 문헌 등 자료 수집을 통해 대상계획의 특징 및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획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나 기존 연속계획의 성과를 다룬 보고서를 참고하게 됨.
  - 4단계에서는 수혜대상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첫 번째 개선안을 도출한 뒤, 5단계에서 전문가·공무원·NGO 관계자로부 터 첫 번째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는 것임.
  - 6단계에서 계획 담당자는 이렇게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 출된 최종 개선안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가 이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담당부처에 통보하면, 계획 담당부처는 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계획을 여성가 족부에 보고하도록 함.
- 이러한 시범분석 모델은 기본 틀에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데, ① 분석평가대상 선정 ② 분석평가서 작성 ③ 검토의견 반영이라는 큰 틀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두 모델은 분석평가서 작성법을 안내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영국 모델의 경우 자료수집과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세부단계를 명시한 반면, 우 리나라의 성별영향분석 지침에서는 분석의 단위(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제시하여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은 분석평가서 작성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 단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으나, 이해관 계자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수 렴은 일반적임. 문제는 해당 계획에 대하여 어떤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이 제시되고 수렴되는가 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체계를 보면 세 개의 핵심 주체가 있고 각 주체별로 역할이 다름.
  - 첫째, 중앙부처의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센터는 지역고용심의회(지방사회적기 업육성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 성 모델을 발굴하고 고용센터의 사회적 기업 인증관리 및 취약계 층 고용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셋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원기관 및 민간부문에서는 공공 구매와 판로개척, 인력양성과 인증·모니터링, 네트워크 지원을 하고 지역·업종별 협의회, '사회적기업 전국네트워크', NGO와 종교 계·경영계, 자원봉사 등 민간참여 기반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분석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체계가 광범위할 경우 어떤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가 모호해 질 수 있음. 다만 대상계획의 추진절차 상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행

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서 공청회 회의록 등을 첨부 자료로 포함시키도록 한다면, 여성가족부가 검토의견서 작성 시 성별요구 파악 및 성별 요구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심포지엄,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영향 발생가능성과 성별 차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어야 할 것임.
- 분석평가서 작성 시 해당 분석평가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함.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계획 수립과 이후의 시행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서는 반영 여부를 결정짓는 심의의결 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 지, 아울러 민간과 지역의 파트너십 강화 측면에서도 성별영향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제2차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은 사업적 기업의 자생 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과 지역의 파트너십 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그 가운데 민간의 인적 자원 연계강화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퇴직자 등을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거나 프로 보너 사업 등을 통해 전문인력과 사회적 기업을 연계하고자 하였 는데, 이러한 인력의 조건이 상당 수준의 전문성과 경력을 필요 로 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그러한 사회참여 기회와 경험이 적은 여성들은 민간-지역 파트너십 관련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사 회구조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 절차 에서 민관협력의 추진체계를 가진 계획의 경우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여성발전기본법은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

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 13명 가운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남성의 비중은 75% 수준임. 육성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기업 거버넌스의 여성대표성을 향상시킬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제시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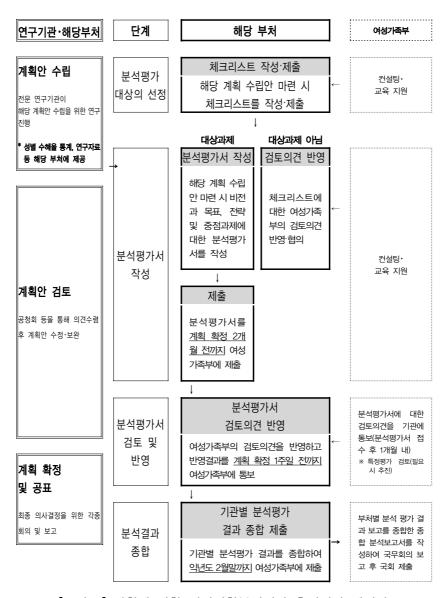
-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관련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문제제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추진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할 것임.
-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가 제출되고 난 후,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며, 개선의견의 경우 반영결과를 해당계획 확정 전까지 여성가족부에 다시 통보하는 절차가 이어짐.
- 분석평가 이후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결과를 취합 하여 종합 작성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함.
- 이와 같은 추진 절차에서 분석평가서를 계획 확정 2개월 전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획마다 수립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기에 일 관된 제출기일을 적용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계획(안)이 11월 초에 마련되고, 정책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약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위원회에 상정되었음. 따라서 체크리스트에 계획수립 일정을 명 시하여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공청 회나 관계기관 협의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개선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 제출기한을 계획수립 초기단계로 규정하고, 공청회나 관계기관 협의회에 여성

가족부 검토의견 담당자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성별영향분 석평가 지침에 포함시켜야 함.

- 계획은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수립·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개선안이 수용되어야 하며, 관계기관에 관과의 소통과 합의 없이는 실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도출된 개선안을 종합하여 체크리스트는 말 그대로 대상과제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계획(안) 수립 초기에 제출하고, 계획 수립 일정을 함께 첨부하도록 지침을 수정하였음.
- 담당 공무원이 대상과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통 체크리 스트만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해 분석평가 대상으로 재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절차상 남겨두었음.
- 다음으로 추진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에서 시행계획 반영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앞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안 작성 주체가 공무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공무원 1인이 기본계획 수립안 내 용을 담당하기 보다는 주로 여러 공무원들이 팀을 이루어 공동 작 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함. 또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립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본계획 담당 공무원 1인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전 과정을 담당하기에 실질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실제 시범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 내용의 많은 부분 이 연구기관의 연구물(보고서, 보도자료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연구기관과 계획 담당부처가 연계하여 성별영향분 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음. 연계된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담당부처가 성별 수혜율 통계 및 연구자료 제공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되었음. 성별 영향분석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가족부는 컨설팅과 교육 지원 을 담당하고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처에 전달함. 그 중 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여 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부처에 전달하는 것임.
  - 따라서 적절한 개입시점을 정하여 개선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을 부처 에 통보하도록 명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해당부처는 계획을 포함한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는 일정으로 구성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 개선안은 [그림 2]와 같음.



[그림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 개선안

- 아울러 분석평가 과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현재의 지침에는 분석평가 항목이나 제출기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 지만,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누구로부터 어떠한 의견 을 구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분석평가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구조를 거쳐서 어느 수준 의 의견을 반영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계획수립 과정에 관여하는 의사결 정기구를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를 들어 계획 수립연구를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 립추진위원회나 최고 심의의결기관에 젠더 이슈를 반영할 수 있 는 분과를 마련하거나 젠더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최종심의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 반영 여부도 해당 위원회에서 의 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임. 개선안 반영여부에 대해 서도 여성가족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연간계획이나 세부사업 계획 수립 시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참고하 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방안

### 가. 분석방법의 개발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분석방법의 개발임. 시범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항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도 됨.

- 공공기관의 사업이 대부분 법령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업무의 위탁을 받아 시행되고, 자체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가 중앙행정기관 장의 위탁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 석평가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시범분석에 기초하여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2013 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서를 참고하되,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체 평가와 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 분하였음.
  - 사업 담당자가 작성하기에 적합한 지침서 분석항목을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는 분석항목으로 활용하여 적용하였음.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는 심층면접 또는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환경 및 정책 수혜의 성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또한 사업 수행과정의 성별 형평성은 기관이 제공한 자료뿐만 아니라 기관 실무자, 전문가, 수혜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질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체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실무자와 전문가에 대한 질적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성 별영향분석평가 지침서에 따라 개요,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 한 통계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환경이나 성별 요구도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음.
  -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보다는 사업 수혜와 예산

배분 통계자료를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자체평가로 분석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서 실질적 인 정책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환류가 용이할 수 있음.

### 〈표 6〉00부 산하기관 분석평가 항목

영역 구분	내용	자료	기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추진근거, 주요 사 업내용(사업 목표, 내용, 사업 기반 구축 현황, 예산 현황)	· 사업계획서 · 사업결과보고서	
정책 환경 및 정책 수혜 성별 특성	· 사업과 관련된 성별 요구 차이 · 사업 수혜 성별 비율, 사업 예산 성별 배분	<ul> <li>기존 조사 연구 자료</li> <li>공단 제공 수혜자 성별</li> <li>통계, 예산 내역</li> <li>전문가, 실무자, 서비스</li> <li>제공자 심층면접</li> </ul>	· 심층면접 자료는 특정평가시 활용
사업 수행 과정의 성별 형평성	· 정책결정과정     · 홍보방법(인지도 성별 차이, 홍보 방법)     · 사업수행방식(노후준비 진단 도구, 상담 및 교육 장소와 시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내용, 인력)	· 공단 내부자료 · 사업 안내서 · 사업홍보지 · 공단 실무자,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 심층 면접	· 심층면접 자료는 특정평가시 활용
성별 형평성 제고 방안	・각 영역 성별 형평성 제고 방안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법령, 예산, 사업 수행방식 구분 조치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 나. 추진절차의 적용

 본 연구에서 부처 산하 준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 범적으로 수행해 본 결과에 의하면, 크게 4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이는 준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현행 여성가족부 지침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를 기본적으로 준용하면서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임.

### 1) 대상과제의 선정과 체크리스트의 작성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 해서는 공공기관의 기획부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며 대상과제의 성별 관련성 파악을 위해서는 선행 연구와 정책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여성 이슈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함.
- 공공기관이 해당부처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요청을 받으면 기획부서에서 회의체(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시범분석사례였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는 기획조정실 에서 사업의 내부 조율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를 적용하게 됨. 사업선정 체크리스트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사용하는 과제선정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음. 기획조정실은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소관부처에 제출함.

### 2)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작성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평가방법이 특정 평가인지 자체평가인지에 따라 분석평가서 작성 업무의 주체가 달라짐.
  - 해당기관이 특정 평가를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부서와 논의하여 평가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음. 외부 전문가는 해당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

받아 해당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분석평가서를 작성함.
- 자체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사업 담당부서 에서 분석평가서 작성 업무를 맡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노후 설계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의 업무인데, 해당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 분석을 하는 동안 젠더 분석에 대해 여성가족부

###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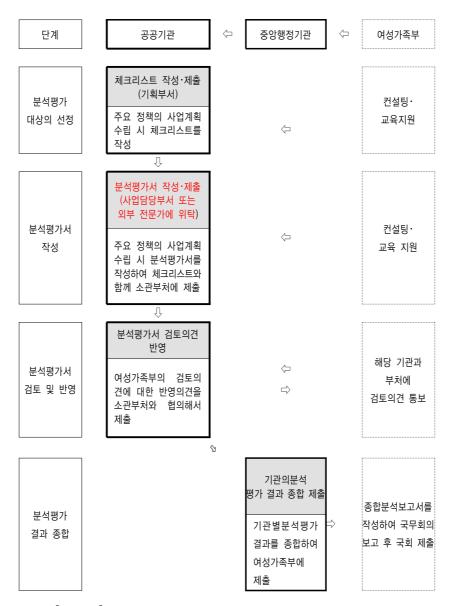
사업담당부서가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 공단의 공식적 승인을 통해 소관부처에 제출하고, 소관부처는 다른 분석평가서와 함께 여성가족부에 제출함.

의 컨설팅이나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여성가족부는 소관부처에 공공기관이 작성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하고 소관부처는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반영의견 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함.

# 4) 분석평가 결과 종합

 소관부처는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협의 하고 부처가 수행한 대상과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검토의견 서, 그에 따른 반영의견서를 공공기관이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서, 반영의견서와 함께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여성가족 부에 제출함.



[그림 3]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

- 앞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방법과 추진절차 등의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변화된 제도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였음. 이에 제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에 대한 운영방안 개선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몇 가지 사항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개선안을 해당 계획에 적극 반 영하도록 하는 한편, 연도별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에서도 이를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50% 이상으로 나타났기에, 연간 세부계획 수립 시 분석평가 결과 를 고려함으로써 환류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과 컨설팅이 강화되어야 함. 공무원들은 정부정책의 기획주체로서 성별영향분 석평가 제도운영에서 핵심적인 주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 정기관의 공무원과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의 교육 참여가 낮아, 제도운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국제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담당자의 성인지 역량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이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음(UNDP, 2006).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매년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기관장 평가항목에 직원의 성인지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 컨설팅이 확대되어야 함.
  - 2013년 현재 16개 시도별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고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들은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2013년에 17개 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대상과제의 수가 크게 증가한 변화와 맞물려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한 지원예산도 확충되어야 할 것임.
- 셋째,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대로 공무원이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연구자가 수행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형태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분석평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전문 가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절차가 구성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특정평가의 예산을 확보하고 소관부 처가 연구자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정책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함.
  - 농촌진흥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상과제들의 경우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여성가족부는 수행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성별영향분 석평가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 해외사례를 통해서 얻어진 시사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음. 외국의 분석절차를 보면 공무원 뿐 아 니라 젠더 전문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 수혜집단에 속한 일 반 여성과 남성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이 포함되어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공공정책에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고 여성과 남성의 각기 다른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젠더 거버넌스에 기초한 제도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UNDP는 성 주류화의 시행을 평가하면서 추진단계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기계적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UNDP, 2006), 유럽 연합(EU)은 성 주류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한편, 이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성 주류화 실천 커뮤니티(GM Community of Practice)의 구축을 강조하였음(EU, 2013).
-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성 주류화와 함께 적극적 조치라는 이중 트랙(Dual track)을 통해서 현존하는 성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입 장임. 세계은행(World Bank)도 최근 몇 년간 성 주류화 노력을 가 속화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빈곤감소와 개발의 핵심 사안이라고 인식하면서 '성 주류화를 위한 로드맵'과 '추적 시스템(Tracking system)'을 통해 성인지 관련 정보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초한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있음(Work Bank, 2011; 2013). 그 과정에서 정책 수혜집단에 속한 여성들을 성 주류화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환경을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젠더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에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젠더 전문가, 지역사회에서 활동 하는 풀뿌리 단체의 활동가들, 수혜집단의 여성과 남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거버넌스 포럼'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발표와 함께 정책 환류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공감대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앞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연구추진체계 등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새롭게 정책대상에 포함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안과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것임.
- 첫째,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성인지 정책을 위한 분석 가이드를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
-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사업의 성 평등성을 제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확대된 정책대상에 관한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이 제도의 운영성과를 널리알리고 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김경희·김둘순·최유진·문희영·김지혜·윤자영·류연규(2013).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 I ).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고용노동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교육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